



등나무 전지작업 중 추락



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등나무 구조물 위에서 피해자가 전지작업을 하던 중 노후된 등나무 구조물(1995년 설치)이 파손되면서 약 3m 아래 콘트리트 계단으로 추락하여 사망



발생 원인

- 안전한 작업대 미사용
 - 작업발판이나 이동식비계 등을 사용하지 않고 노후·약화된 구조물 위에서 작업
- 개인보호구 미착용
 - 안전대,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

TIP

안전작업

1 추락방지조치 철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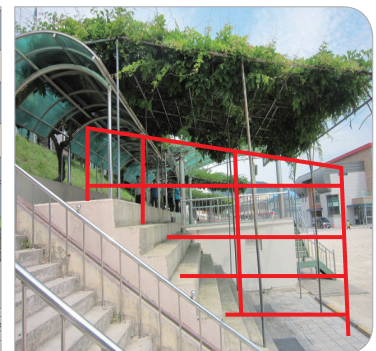
-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작업발판(비계 등)을 설치하고 작업
-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거나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

2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

-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



안전대 부착설비 설치



비계 및 작업발판 설치

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(보호구의 지급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(추락의 방지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




등나무 전지작업 중 추락

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추락예방조치를 실시하세요!

